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70호

「2026년도 농지 객토(논/밭) 지원사업」 공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농지의 토양개량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 위하여
「2026년도 객토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도 객토사업 지원계획 1부. 끝.

2025년 11월 일

화 천 군



2026년도 객토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2026년 객토 지원사업 추진계획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지개량으로 농업생산성 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 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농지법 시행령 제22조(토양개량 보전사업 : 객토)
3.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4. 사업량 : 35ha(객토 운반 35ha / 24톤 덤프 2,100대)
5. 사업비 : 357,000천원 (군비 249,900, 자부담 107,100)
6. 지원내용 : 농경지 객토사업 희망농가에 객토 지원
7. 지원한도
 - 1인당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량 대비 선정사업량 변경가능

II.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화천군에 실거주를 1년이상하고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제외 대상 >

- 최근 5년 이내 객토지원 받은 필지 사업대상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용자금 체납자 제외
- 토양개량 목적외 땅을 높이는 등,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행위는 지원 제한(성토, 절토, 지목변경(단 전·답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등)
- 사업 확정후 변경 승인없이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급제한

※ 대상 농지 연작피해, 과거지원여부, 세금체납, 현장여건등 감안하여 선정

※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 목적에 부합되도록 양질의 토양 사용하며, 농경지 매립 등 타목적 사용 불가 (보조금 지급제한)

3. 지원형태

- 지원조건 : 보조70%, 자부담30%
- 지원단가 : 1,020원 /m²(10cm 높이) ※ 지원기준 사업비 초과시 자부담 원칙
- 지원조건(안)
 - 객토 : 채토장에서 대상농지로 흙 운반·적재 비용의 일부 지원

구 분	신청기준(A)	기준단가(B)	지원단가(C) (C=A×B)	비 고
흙 운반·적재비	6대/1,000m ²	170,000원/대	1,020,000원 /1,000m ²	24톤 덤프
	10대/1,000m ²	102,000원/대		15톤 덤프

* 24톤 덤프 기준 : 1트럭/160m² [1트럭 기준 170천원/10a 한도]

* 15톤 덤프 기준 : 1트럭/100m² [1트럭 기준 102천원/10a 한도]

예) 면적 1000m², 24톤 덤프 객토인 경우, 6대/1,020,000원 사업비 배정

- 지원한도 : 면적 1,000m²~10,000m²이내

6. 추진방향 : 채토장은 농가 자율선정하며, 업체 계약으로 추진

7. 객토기준 및 유의사항

-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
-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목적에 적합할 것
-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 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Ⅲ. 사업 실시요령

- 보조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시행 전에 객토 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 객토 시 농로, 논두렁 보수 및 기타 객토로 인한 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민원 최소화
- 대상자선정 완료 이후 계약업체는 객토 대상 필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고
- 객토용으로 공급되는 흙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양질의 흙을 공급
 - 객토 시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 혼입 및 재생골재 등은 제외
 - 객토용으로 공급되는 흙의 점토함량은 10% 이상으로 하되,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연작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점토함량 조정이 가능함.
- 객토용으로 공급되는 흙은 돌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흙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농가가 교체 투입을 요청하는 경우 객토 대행업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 객토용으로 공급되는 흙의 양은 덤프트럭의 적재량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최대치로 공급
- 사업량 및 대상 농가 변경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객토를 완료한 농가는 흙을 퍼기 전에 읍·면장 또는 군에 완료 확인 요청
 - ※ 담당자는 현지 방문하여 객토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사진 첨부
 - ※ 농가가 객토확인서에 날인한 경우에는 객토량, 토양성분 등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읍·면장은 현지확인 후 객토완료 확인서 및 농가별 보조금청구서를 취합하여 군에 제출
 - ※ 사업완료 제출서류 : 완료확인서, 사진첩, 입출금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 ※ 책임행정 구현(반드시 현지확인하여 사업실적 확인 후 완료확인서 발급)
-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는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 시 통장 거래내역과 입금표(금융기관 거래내역)를 대조하여 정산

IV.추진일정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광고 : 2025년 11. 14.(금) ~ 12. 15.(월)
- 사업대상자 검토 및 선정 : 2026년 1월
-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 추진 : 2026년 2월 ~ 12월

붙임 1. 2026년 객토지원사업 추진계획(화천군) 1부.

2. 2026년 객토지원사업 신청내역(서식) 1부. 끝.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화천군 보조금사업 제외대상 검토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단, 농업관련 법인은 제외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자(필지포함)
- 화천군 관내 주민등록 1년 미만인자, 관외거주 출입경작자, 실거주여부
- 사업포기, 교육이수(농업관련), 보조금 정산, 지방세 납부, 최근 보조사업 등 종합 검토합니다.

□ 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 등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를 제한함.

□ 기타 유의사항

- 지방 보조사업의 경우 개인별 1사업 1계좌 전용통장(카드) 사용이 원칙
 - 단, 입출금은 계좌간 거래만 인정, 타용도사용 금지, 정산시까지 통장(계좌) 유지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신청시 기재사항 누락 및 잘못기재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및 산림녹지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화천군농업기술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객토지원사업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주민등록 등·초본		
3.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 내역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_____

*** 체크한 등록증의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세요**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_____

전화번호 : _____

[붙임 3] 객토업체 계약서(안)

계 약 서(안)

□ 계 약 명 : 2026년도 읍·면 객토사업

□ 사 업 량 : 명 대/대당 톤

※ 단, 사업 포기물량 발생 시 사업량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금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계약내용

제1조(정의) 본 계약 체결을 위하여 객토 신청농가를 “갑”이라 하고 객토 사업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객토기간)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객토원) 객토용 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객토용 흙은 객토원으로 허가를 받은 흙을 사용해야한다.
2. 객토용 흙은 점토함량이 10%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연작장애 해소 등 점토함량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점토함량을 기준이하로 조정 할 수 있다.
3. 객토용 흙은 돌이나 폐기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의 흙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재도급 금지) 객토사업은 “을”이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객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도급 할 수 없다.

제5조(사업착공 및 객토방법) “을”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 객토를 시작할 때에는 1일전에 반드시 “갑”에게 통보하고 사업당일 현장에서 농가로부터 객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을”은 “갑”의 농경지를 사전 답사하여 차량진입도로 및 객토 실시 대상지를 확인 후 농가가 희망하는 필지에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을”은 객토를 시작 하기 전 객토 대상 필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고

“을”은 객토사업 중 진입로, 논·밭두렁 파손에 대하여 “을”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중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 후 “갑”의 승낙으로 공기를 조정하거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객토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2.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3. 기타 “갑”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계약해지) “갑”은 제6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공을 지연하는 경우(제8조 각호에 해당 제외)

2. 흠의 양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3. 객토 일정을 어기거나 “갑”이 요구하는 장소에 객토를 하지 않을 경우

제8조(중도포기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중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객토를 포기 할 경우 기 완성 부분에 대한 “갑”에게 사업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준공검사) 1. “을”은 객토가 완료되면 객토확인서에 “갑”의 확인을 받아 들녘별 사진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완료확인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을시 담당 공무원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대당 **금 원**으로 한다.

제11조(사업비 정산) “갑”은 사업완료 후 사업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갑”은 행정보조금을 수령하는 즉시 “을”에게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사업비 정산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약서에 없는 사항)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객토신청농가와 객토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13조(기타) 위 계약체결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객토원 허가서 1부.

2. 2026년도 농가별 객토량 및 사업비 내역 1부. 끝.

2026년 월 일

위 계약자

“갑” **보조사업자** 주소 :

성명 : (인)

“을” **객토업체** 주소 :

성명 : (인)

※ 위 계약서는 변경 가능하오니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완료보고서식

사업완료 보고서

□ 사업명 : 2026년 객토지원사업

□ 총사업비 : 원(보조금 / 자부담)

□ 사업장주소 :

□ 사업내역 : 객토지원

상기 사업을 사업계획 및 지침서의 약정대로 완료 하였기에 보고하오니 보조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 보고자

주소(단체명) :

성명(대표자) : (인)

연락처 :

화천군수 귀하

- 첨부 1. 보조금청구서 (별도서식), 보조금 산출내역서 각 1부.
2. 객토완료확인서 1부
3. 자부담입금표, 통장사본
3. (세금)계산서 1부
4. 사진 각2부 (시설·장비인 경우 전,중,후 각2매 촬영제출)
5.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6년 객토 지원사업
- 사 업 기 간 : 2026 . ~ 월
- 보조 사업자 :
- 계 좌 번 호 : 통장사본(별첨)
- 청 구 금 액 : 금 _____ 원(금 _____ 원)

- 청구내역 (단위: 원)

사업실적			1)부가세환급금			보조금 청구금액 (a-b)	비고
계	보조금 (a)	자부담	계	보조금 (b)	자부담		

※ 1)부가세 환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에 의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1항」의 【별표5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함.

상기 금액을 2026년 객토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단체명) : _____

성 명(대표자) : _____ (인)

연 락 처 : _____

화천군수 귀하

보조금 산출내역서

1. 사 업 명 : 2026년 객토 지원사업
2. 보조대상자 :
3. 보조금 산출내역

(단위: 원)

사 업 명	사 업 비	보조금	자부담	산출기초
계				
객토지원				지원단가 : 1,020원/㎡

2026년 객토 지원사업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

세금계산서(원본)

금융거래자료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 사업명 : 2026년 객토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 사업기간 : 2026 . ~ 월

◦ 보조금 사용 집행내역 (단위:원)

단위사업 (품명)	사업계획				집행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객토								

첨부 : 증빙서류 (보조금 통장이체확인서 등) 각1부

2026 . . .

주 소(단체명) : _____

성 명(대표자) : _____ (인)

연 락 처 : _____

화천군수 귀하